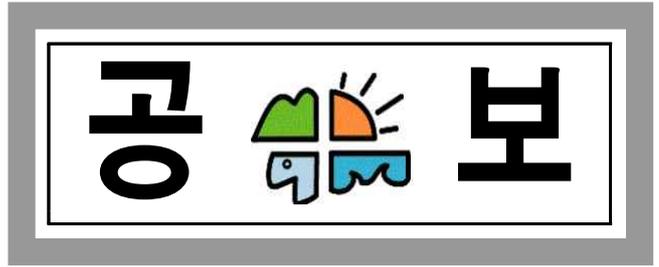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81호 2022년 4월 21일(목)

## 훈 령

-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2

##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종로3-18호선, 소로1-13호선, 소로1-16호선, 소로2-9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3

## 공 고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1-23호선, 소로1-8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 4
- 보상계획공고(도시계획도로 종로2-21호선 개설공사) ..... 7
- 보상계획공고(도시계획도로 소로1-16호선 개설공사) ..... 10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4월 2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훈령 제 호

###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를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토지과장, 건설도시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는 속초시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속초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속초시 고시 제2022-44호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3-18호선, 소로1-13호선, 소로1-16호선, 소로2-9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3-18호선, 소로1-13호선, 소로1-16호선, 소로2-9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4월 22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8	12	보조간선	102	중1-10 청호 1342도	소2-91 청호 459-160잡	일반도로	2007. 12. 14. (속고 제07-69호)	가각
변경	중로	3	18	12	보조간선	102	중1-10 청호 1342도	소2-91 청호 459-160잡	일반도로	2007. 12. 14. (속고 제07-69호)	정리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463	중3-18 청호 1342도	청호 1341-5잡	일반도로	1977. 4. 19. (강고 제77-22호)	폭원
변경	소로	1	13	10~13	국지도로	463	중3-18 청호 1342도	청호 1341-5잡	일반도로	1977. 4. 19. (강고 제77-22호)	확장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310	소1-14 청호 444-166	소3-140 청호 444-28	일반도로	1977. 4. 19. (강고 제77-22호)	폭원
변경	소로	1	16	10~12	국지도로	310	소1-14 청호 444-166	소3-140 청호 444-28	일반도로	1977. 4. 19. (강고 제77-22호)	확장
기정	소로	2	97	8	국지도로	245	중3-12 청호 444-27	중3-18 청호 459-332	일반도로	1977. 4. 19. (강고 제77-22호)	폭원
변경	소로	2	97	8~10	국지도로	245	중3-12 청호 444-27	중3-18 청호 459-332	일반도로	1977. 4. 19. (강고 제77-22호)	확장

#####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8호선	◦ 가각부 선형변경	◦ 소로1-13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도로가각부 선형변경
소로1-13호선	◦ 폭원확장: B=10m → 10~13m(증 3m)	◦ 주상복합 신축에 따른 완화차로 확보
소로1-16호선	◦ 폭원확장: B=10m → 10~12m(증 2m)	◦ 주상복합 신축에 따른 보도 확보
소로2-97호선	◦ 폭원확장: B=8m → 8~10m(증 2m)	◦ 주상복합 신축에 따른 보도 확보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1.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의 열람을 실시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2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장사동 43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대신자산신탁(주) 대표 김철중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기개설 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소로1-23호선	B=10m, L=665m	-	B=10m, L=440m	
	소로1-87호선	B=10m, L=180m	-	B=10m, L=158m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0. 24.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 4. 22. ~ 2022. 5. 6.
- 장소: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시설규모	면적	비고
도로	소로1-23호선	B=10m, L=440m	5,345㎡ (당초) 5,425㎡ (변경)	도시계획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소로1-87호선	B=10m, L=158m	2,266㎡ (당초) 2,260㎡ (변경)	

※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분할(이동)에 따른 변경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소로1-23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성 명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1	장사동	431-11	임	40	-	33	33	이*옥	당초
1	장사동	431-15	임	33	-	33	33	이*옥	변경
2	"	431-3	임	250	-	21	21	이*옥	당초
2	"	431-13	임	21	-	21	21	이*옥	변경
3	"	산280-1	임	2,380	19	17	36	속초시	당초
3	"	산280-9	임	98	78	20	98	속초시	변경
4	"	431-2	철	3	3	-	3	국(국토해양부)	당초
4	"	431-2	철	3	3	-	3	국(국토해양부)	변경
5	"	431-1	전	400	14	25	39	국(기획재정부)	당초
5	"	431-12	전	39	14	25	39	국(기획재정부)	변경
6	"	431-4	임	23	-	17	17	한*경	당초
6	"	431-14	임	16	16	-	16	한*경	변경
7	"	432-1	전	3,088	-	2	2	한*경	당초
7	"	432-4	전	2	-	2	2	한*경	변경
8	"	산280-8	철	166	97	43	140	한*경	당초
8	"	산280-10	철	11	5	6	11	한*경	변경
9	"	산280-11	철	152	128	24	152	한*경	변경
9	"	437-6	철	310	145	68	213	한*경	당초
10	"	437-32	철	215	147	68	215	한*경	변경
10	"	437-15	대	20	20	-	20	국(기획재정부)	당초
11	"	437-15	대	20	20	-	20	국(기획재정부)	변경
11	"	431-5	도	2,643	2,643	-	2,643	국(국토해양부)	당초
12	"	431-5	도	2,643	2,643	-	2,643	국(국토해양부)	변경
12	"	437-2	철	362	-	106	106	대신자산신탁(주)	당초
13	"	437-36	철	105	-	105	105	국(기획재정부)	변경
13	"	437-9	철	115	-	62	62	국(기획재정부)	당초
14	"	437-33	철	60	-	60	60	국(기획재정부)	변경
14	"	437-16	철	16	16	-	16	국(국토해양부)	당초
15	"	437-16	철	16	16	-	16	국(국토해양부)	변경
15	"	437-12	철	390	-	191	191	국(기획재정부)	당초
16	"	437-34	철	191	-	191	191	국(기획재정부)	변경
16	"	437-24	철	785	644	8	652	국(국토교통부)	당초
17	"	437-35	철	651	643	8	651	국(국토교통부)	변경
17	"	437-5	철	1,520	772	312	1,084	국(국토해양부)	당초
18	"	437-29	철	1,058	746	312	1,058	국(국토해양부)	변경
18	"	517-37	도	872	55	-	55	국(국토해양부)	당초
19	"	517-37	도	73	55	-	55	국(국토해양부)	변경
19	"	산268-1	철	275	12	-	12	국(국토교통부)	당초
20	"	산268-7	철	9	9	-	9	국(국토교통부)	변경
-	-	-	-	-	-	-	-	-	당초
21	장사동	432-3	전	255	-	16	16	국(산림청)	변경
-	-	-	-	-	-	-	-	-	당초
22	장사동	437-22	잡	11	11	-	11	국(국토해양부)	변경
계				13,658	4,440	905	5,345		당초
계				5,682	4,534	891	5,425		변경

■ 지장물조서(소로1-23호선)

일련번호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장사동	432-1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166.9	한*경	영랑동 131-2*	
2	“	산275-2	창고	콘테이너	4.3	㈜삼*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275-*	
				철제조립식	24.0	㈜삼*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275-*	
3	“	457-2	간판	철재	0.1	김*복	속초시 사진용촌길 4* (장사동)	

■ 토지조서(소로1-87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명	
1	장사동	517-37	도	872	285	12	297	국(국토해양부)	당초
1	장사동	517-37	도	73	18	-	18	국(국토해양부)	변경
2	장사동	517-60	도	276	276	-	276	국(국토해양부)	변경
2	“	457-3	대	408	9	28	37	홍*경	당초
3	“	457-7	대	37	9	28	37	홍*경	변경
3	“	457-5	답	352	36	10	46	최*성 외 1인	당초
4	“	457-8	답	46	36	10	46	홍*경 외 1인	변경
4	“	455-3	원	1,021	676	40	716	국(기획재정부)	당초
5	“	455-12	원	715	675	40	715	국(기획재정부)	변경
5	“	산313-1	유	887,397	50	-	50	국(국토해양부)	당초
6	“	산313-24	유	50	50	-	50	국(국토해양부)	변경
6	“	429-16	임	54	22	-	22	국(국토해양부)	당초
7	“	429-23	임	21	21	-	21	국(국토해양부)	변경
7	“	453-4	원	3,176	12	-	12	주식회사신세계 영랑호리조트	당초
8	“	453-14	원	12	12	-	12	주식회사신세계 영랑호리조트	변경
8	“	산268-1	철	275	41	11	52	국(국토교통부)	당초
9	“	산268-8	철	13	13	-	13	국(국토교통부)	변경
10	“	산268-9	철	2	-	2	2	국(국토교통부)	변경
9	“	산268-2	임	7,644	520	218	738	정*성	당초
11	“	산268-11	임	761	537	224	761	정*성	변경
10	“	산268-4	임	496	75	15	90	안*수	당초
12	“	산268-12	임	97	82	15	97	안*수	변경
11	“	456	전	754	188	18	206	안*수	당초
13	“	456-1	전	212	194	18	212	안*수	변경
계				899,911	1,914	352	2,266		당초
계				2,315	1,923	337	2,260		변경

■ 지장물조서(소로1-87호선)

일련번호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장사동	산268-2	창고	목재	5.8	정*성	광진구 구의동 631-*	

# 보 상 계 획 공 고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2-21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서를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0일

## 속 초 시 장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도시계획도로(중로2-21호선) 개설공사
- 나.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다.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2-21번지 일원
- 라. 사 업 량 : 도로개설(L=295.0m, B=15.0m)
- 마. 사업기간 : 2020. 6. 26. ~ 2023. 12. 31.
- 바.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 2. 보상대상

- 가. 토지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교동 일원(편입토지내역 : 별도기재)
  - 나. 물건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4. 21. ~ 5. 6.
- 나. 열람 및 이의 신청장소 : 속초시청 건설도시과(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다. 열람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역
-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 등에 비치 및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보상계획

#####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속초시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속초시에 감정평가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다.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보상의 시기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마. 보상의 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 지급(계좌 입금)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이며 조사거부, 장기부채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에 대하여는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향측면적 등)를 기준으로 공고하였으며, 열람 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대로 보상합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연락처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속초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분할측량 결과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편입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상계획공고 당시 발급된 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실제와 다를 경우 속초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 매수여부 판단을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 개인별 보상액,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통지할 예정입니다.

※ 도시계획도로(중로2-21호선) 개설공사 편입토지(물건) 내역

구분	소재지	편입지번
토지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3-21, 3-6, 1077, 1106-4, 1106-6, 1105, 1095-2, 1095-1, 1078-6, 1078-5, 1078-4, 1074-2, 1074-4,
	강원도 속초시 교동	803-4, 801-3, 803-7, 801-1
물건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106-3, 1106-6, 1078-1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 등 일체

# 보 상 계 획 공 고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소로1-16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서를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0일

## 속 초 시 장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도시계획도로(소로1-16호선) 개설공사
- 나.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다.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44-166번지 일원
- 라. 사 업 량 : 도로개설(L=310.0m, B=10.0m)
- 마. 사업기간 : 2020. 6. 26. ~ 2023. 12. 31.
- 바.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 2. 보상대상

- 가. 토지 :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일원(편입토지내역 : 별도기재)
  - 나. 물건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4. 21. ~ 5. 6.
- 나. 열람 및 이의 신청장소 : 속초시청 건설도시과(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다. 열람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역
-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 등에 비치 및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보상계획

#####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속초시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속초시에 감정평가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다.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보상의 시기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마. 보상의 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 지급(계좌 입금)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이며 조사거부,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에 대하여는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향측면적 등)를 기준으로 공고하였으며, 열람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대로 보상합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연락처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속초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분할측량 결과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편입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상계획공고 당시 발급된 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실제와 다를 경우 속초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 매수여부 판단을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 개인별 보상액,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통지할 예정입니다.

※ 도시계획도로(소로1-16호선) 개설공사 편입토지(물건) 내역

구분	소재지	편입지번
토지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44-166, 444-176, 444-12, 444-19, 444-13, 444-76, 444-47, 444-118, 444-58, 444-3, 444-20, 444-148, 444-63, 444-41, 444-14, 444-110, 444-21, 444-68, 444-69, 444-10, 444-70, 444-168, 444-162, 444-116, 459-114, 444-160, 459-1, 459-162, 444-28, 444-2, 444-53
물건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 등 일체